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519576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헌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 2014. 12. 8.

판결 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936,726원과 그 중 88,446,959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4. 9. 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2013.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88,936,7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A가 2013. 9. 25.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4.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8,446,9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든 가압류비용이 381,487원, 추가보증료가 108,280원이고, 2014. 4. 28. 이후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3. 7. 4.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시흥시 C아파트 제214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7. 5.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88,936,726원(=88,446,959원+108,280원+381,487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88,446,959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4. 4. 28.부터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되는바, 다만 수익자인 피고 B이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로서, 피보전채권액인 88,936,7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제의를 받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하고 매수한 것으로서, 선의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 1억 5,500만 원 가량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267,0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0,000,000원 합계 27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나 갑제9호증, 을제1에서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에서 13호증,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2006. 9. 26.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여 2006. 10. 30.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2008. 10. 27. 8,000만 원, 2010. 10. 27. 9,000만 원, 2010. 10. 27. 1억 500만 원으로 각 보증금만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자 매매대금을 시세와 유사한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억 500만 원은 보증금과 상계하고,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친인척관계 또는 거래관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예영